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김성태 간사 723-5303)
제 목 동아건설 불법적인 용도변경 시도에 대한 논평
날 짜 1998. 4. 30. (총 2 쪽)

보 도 자 료

동아건설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시도를 중단해야

1998. 4. 30. (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동아건설이 지난 1991년 간척사업을 완공한 후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북부매립지 (일명 동아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매립지사업은 원래 농경지조성을 전제로 허가되었는데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동아건설이 그 용도를 상업지구로 바꾸겠다고 나선 데서 발단이 된 것이다. 당초 허가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용도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동아매립지의 경우, 많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그 용도변경이 가져올 피해를 지적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은 동아건설의 부당한 개발차익만 늘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가져올 농경지부족, 환경파괴 등의 문제들은 무시한 채 용도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동아건설의 의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2. 더구나 주무관청인 농림수산부에서 이미 종합적인 고려하에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측이 이를 무시하고 외국의 개발회사와 용도변경을 기정사실로 하고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방적인 단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권능을 명백히 유린하는 처사이자 법치주의에 따라 집행되는 행정체계에 대한 심각

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치권과 관련단체를 움직여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재벌기업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3.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은 법령상 그 인가권한을 가진 농림수산부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야하고 동아건설측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로비에 의하여 인가여부가 결정된다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또는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건설측도 인가를 받으려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고 결론이 나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 정부는 중대한 공공 사업의 결정에 관한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추후도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는 바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